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34
----------	-----

2024. 10. 18.(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최정훈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 라. 상정일자 : 2024년 10월 11일
  -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훈 의원)

### 가. 제안사유

- 도내 인근 지역 간, 관광자원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지역연계관광'을 규정하고,
-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매력있는 관광코스 관련상품 개발과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충북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역연계관광’을 정의함(안 제2조제8호)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관광진흥사업을 정함(안 제5조)
- 관광업무의 위탁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7조)
  - 대상업무를 추진사업(제5조)과 관광안내소(제6조)로 지정
- 보조금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8조)
- 위탁 대상 업무 조항을 삭제함(종전 제9조 삭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공 보상을 삭제함(종전 제11조 삭제)
-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 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연계관광’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관광진흥사업 추진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는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관광사업자 등의 정의는 유지하면서, ‘지역연계관광’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도내 시·군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임.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관광진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관광진흥사업과 관광안내소로 명확히 규정함.
- 안 제8조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과정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0조는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연계관광’의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관광안내소, 보조금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국내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전세기”란 국내·외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8. “지역연계관광”이란 도내 시·군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 등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 진흥 등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사업
2. 관광자원 개발 사업 및 관광(단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
3.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 사업
4.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운영·마케팅 사업 등
5.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6.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7. 관광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8.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도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전세기 취항 등)
9.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활성화사업
10.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안내소)**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 업무,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5조와 제6조의 업무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와 신청·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관광객유치 등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한 시·군에 대하여 사업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